

진료비 감면지침

2006. 05. 02 제정
 2006. 12. 1 개정
 2007. 08. 21 개정
 2009. 07. 01 개정
 2013. 08. 01 개정
 2015. 04. 15 개정
 2015. 09. 01 개정
 2018. 09. 01 개정
 2019. 09. 23 개정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울진군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이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료시혜사업 등 특수한 목적과 임·직원과 그 가족이 의료원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감면하여, 소속감 고취 및 사기양양 등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직원”이라 함은 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울진의료원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.
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가. 일반 휴직자, 육아휴직자, 질병휴직자를 제외한 무보수 휴직자
 나. 수습생(2013. 08. 01 개정)
 다. 삭제(2013. 08. 01 개정)
2. “직원가족”이라 함은 재직 중인 직원의 배우자와 부모(배우자 부모포함) 및 직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
3. 진료비라 함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조정된 제비용을 말한다.

제4조 (진료비 감면) 진료비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은 [별표 1]과 같다.(개정 2007. 07. 01, 2009. 07. 01, 2013. 08. 01, 2015. 9. 1)

제5조 (진료비감면 진료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 단, 특별한 경우 의료원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.(개정 2015. 9. 1)

1.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
2. 자해행위에 의한 상병의 진료
3. 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받는 진료
4. 비급여 진료비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.

가. 초음파, CT, MRI

나. 국가유공자 유가족(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
다. 참전유공자 본인

제6조 (진료비감면위원회) 진료비 감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료비감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7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5. 4. 15)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,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영부장으로 하며, 위원은 기획관리팀장, 재정경영팀장, 원무팀장, 간호부장, 직장협의회 근로자대표 1인 및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(개정 2015. 4. 15, 2018. 9. 1., 2019. 9. 23.)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주무부서 직원 중에서 정한다.

제8조 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5. 4. 15)

제9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진료비감면대상자의 심의에 관한 사항
2. 진료비감면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진료비감면대상자 진료수혜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관계서류 제출) ①진료비를 감면받고자할 때는 진료비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생아는 생후 30일까지 출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4. 15)

② 진료비감면신청서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고, 외래진료일 경우 원무팀 담당직원 서류 확인으로 대체 한다.(개정 2015. 4. 15)

제13조 (진료비 감면시기) 외래진료는 진료비 수납 시, 입원진료는 퇴원진료비 납부 시 감면 계산한다.

제14조 (진료비 감면실적 및 사후관리) 원무팀장은 월간 진료비 감면실적을 익월 1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4. 15)

제15조 (보고)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본조 신설 2007. 9. 1>

부 칙

<제64호 2006. 5. 2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인 2003년 3월 10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는 주무부서의 내부기준을 따른다.

부 칙

<제90호 2006. 12. 1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<제101호 2007. 8. 21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<2019. 09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군수의 인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호과 조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⑳생략

㉑진료비감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간호과장”을 “간호부장”으로 한다.

(별표 1) <개정 2007. 7. 1, 2009. 7. 1, 2013. 8. 1, 2015. 9. 1>

진료비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

대상범위	초·재진료	기타 진료비	종합검진
① 설립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체결하는 진료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자	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		
② 유관기관과 본 의료원과의 협조로서 시행하는 의료봉사환자	삭 제		
③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수락한자	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함(진료비감면위원회에 같음함)		
④ 업무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경우	진료비 전액		
⑤ 임·직원(계약직, 임시직 포함), 울진군의료원 위원회 외부위원	50%	50%	10%
배우자 (계약직 포함)	50%	50%	10%
⑥ 직원가족(계약직 포함)-배우자 부모, 직계존비속	30%	30%	10%
⑦ 공익근무요원(본인)	50%	50%	
⑧ 삭제	삭제	삭제	
⑨ 업무상 재해(공상)를 입은 임·직원	진료비 전액		
⑩ 삭제	삭제	삭제	
⑪ 법률 등에 의거 진료비 감면자로 명시된 자	관련 법률 등에 의함		
⑫ 의료원 내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직원 본인	30%	30%	
⑬ 삭제	삭제	삭제	
⑭ 삭제	삭제	삭제	
⑮ 삭제	삭제	삭제	
⑯ 울진군의료원, 요양병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누적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인자. (단, 3개월이상 비활동중인자는 제외)	10%	10%	
⑰ 삭제	삭제	삭제	
⑱ 국가유공자 유가족(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	10%	10%(비급여포함)	
⑲ 의료원의 진료과실로 정신적, 물질적 손해를 입힌자	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		
⑳ 기타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함		
참전유공자 본인	20%	20%(비급여포함)	

*.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뜻함